

## 지반재해방지센터



최영근

(주)아이콘텍이엔씨 대표이사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의 한반도에 발생하는 강우 역시 형상과 특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도시 지역의 내수피해 증가와 도시외곽 절개지 붕괴 등 2차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표면과 해수면의 온도상승으로 기후가 변화되어 홍수, 폭설, 해일, 태풍의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반도의 재난은 대규모 홍수피해가 주요 원인이며, 태풍으로 인한 홍수피해 증가(2002년 루사) 그리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피해(2003년 매미)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사면과 절개지 비탈면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 7월에 서울경기지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가지 침수발생과 우면산을 비롯하여 경기 북부 일원에서 산발적인 산사태 피해가 대표적인 재해 양상이다.

국립기상청에서는 21세기말 한반도의 기온은 약 4℃ 상

승, 강수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온이 높으면 강수량이 많아져 홍수에 영향을 미치고, 폭우로 인하여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특히 올해의 피해를 살펴보면 지난 태풍 매미 때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인구밀집 및 산업화된 도시지역의 침수와 자연 경사지 붕괴(산사태)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재체제는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은 '재해는 국가에서 막아준다'는 인식에 젖어 있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면 군(軍)까지 투입하는 등 정부 총력체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방재 정책은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각종 재난대비 설계기준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즉 확률강우량과 적설하중, 풍속,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하천 홍수량의 빈도개념, 도시배수시스템의 강우강도 개념 등 방재기준을 재설정하는 기술적인 일과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

재 방재기준으로 변화하는 기상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성을 고려한 재원확보, 취약지역에 대한 경보시스템 강화 그리고 미래사회를 지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제도적 방재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로 풍수해 보험법에 의해 피해 발생시 보상을 목적으로 현행 시행중인 풍수해 보험법과 보험은 다음과 같다.

법률 제7859호,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서, 주택, 비닐하우스가 태풍, 홍수, 호우, 대설로 인하여 풍수해를 당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산피해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행 피해지원제도를 개선한 정책보험이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자발적인 방재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의거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서, 주택, 비닐하우스가 태풍, 홍수, 호우, 대설로 인하여 풍수해를 당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산피해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행 피해지원제도를 개선한 정책보험이다. 풍수해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2항)에 의한 태풍·홍수·호우(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조수)·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을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가 해당된다.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2006년 부터 시범실시 중에 있는 풍수해 보험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도별 1개소씩 9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을 2006년 10월 2일부터 8개 시·군을 추가, 총 17개 시·군으로 확대(9개소 → 17개소)

하고, 풍수해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당초 시범사업 기간 3년(2006.5~2008.12)을 2년(2006.5~2007.12)으로 단축하여 2008년 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영보험을 대체하는 정책보험으로서 풍수해보험의 역할 확대를 위해 현재 무상으로 피해복구비가 지원되지 않는 소상공인 시설인 공장, 상가 및 내부설비, 가재도구 등 동산에 대해서도 2007년도에 도상연습을 실시한 후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풍수해보험의 확대 및 풍수해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별 풍수해 발생이력과 발생위험지역을 나타내는 ‘풍수해보험 관리지도’를 제작하고, 이와 함께 각종 기초통계자료를 DB로 관리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자료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보험을 통해 얻어지는 위험관리기법과 및 풍수해보험지도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의 민관 공동 활용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이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기능을 다할 것이며, 풍수해보험이 정착되면,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게 하는 효과는 물론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복구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 판매하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감독한다. 보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결한다. 손해사정은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사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주민 등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 교육이 수 후, 재해발생시 손해평가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험사업자, 소방방재청, 민영보험사가 함께 표본조사를 실시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한다.